

행정자치부

주 의 요 구

제 목 축산물 행정처분 업소 출입·검사·수거 등 사후관리 소홀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

내 용

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법 제27조, 제28조 또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정지,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하여 그 처분·명령일(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정지기간의 만료일)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출입·검사·수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(다만,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 또는 명령의 이행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다.)

한편 강원도 ○○과에서는 감사 대상기간인 2012. 10.부터 2016. 9.까지 자가품질검사를 수행하지 않아 적발된 관내 축산물가공업자의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위반사항에 대하여 11건의 품목제조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한바 있다.

따라서 강원도 ○○과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아래 [표]의 11개 업소에 대해 그 처분·명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출입·검사·수거를 하는 등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.

그런데도 강원도 ○○과는 처분을 받은 위 11개 업소에 대해 아무런 이유 없이 6개월 이내 출입·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.

【표】 출입·검사 지연 실시 업체 명세

연 번	업체명	소재지	위반내용	처분내용	처분일자	위반업체 출입검사	지연 (개월)
1	○○○유통	춘천시	자가품질 검사 미 실시(4개월)	과징금 3,600천원	2014. 1. 23.	2014. 10. 16.	4개월
2	○○푸드		자가품질 검사 미 실시(7개월)	과징금 3,600천원		2014. 11. 4.	"
3	○○유통		자가품질 검사 미 실시(7개월)	품목제조정지 1개월(2품목)		2014. 11. 4.	"
4	○○○○○(주)		자가품질 검사 미 실시(6개월)	과징금 3,600천원		2014. 11. 4.	"
5	○○유통		자가품질 검사 미 실시(9개월)	품목제조정지 1개월		2014. 11. 5.	"
6	○○○○○갈비		자가품질 검사 미 실시(8개월)	품목제조정지 1개월		2014. 10. 16.	"
7	협동조합○○○○		자가품질 검사 미 실시(8개월)	품목제조정지 1개월(2품목) 및 과징금 3,600천원(1품목)		2014. 11. 4.	"
8	○○○○닭갈비(주)		자가품질 검사 미 실시, 생산·거래내역 미작성	영업정지15일, 품목제조정지 15일	2014. 3. 6.	2014. 11. 6.	2개월
9	○○푸드		자가품질 검사 미 실시	품목제조정지 1개월		2014. 11. 7.	"
10	○○○푸드		자가품질 검사 미 실시	품목제조정지 1개월		2014. 11. 7.	"
11	○○○○ 닭갈비		자가품질 검사 미 실시	과징금 6,000천원 과태료 300천원		2014. 10. 16.	1개월

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는

앞으로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업소에 대하여 6개월 이내 출입·검사 등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